

## 4 부채 / 채무 / 채권

### 4-1. 통합부채 현황

-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
-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20.10. 예정)

### 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-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년	2019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120,719	1,180,084	59,365	
부채(B)	13,106	11,259	-1,847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1.17	0.95	-0.22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  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 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  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※ 2018,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(재무제표) 참조

### 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-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#### 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☐ 우리 금정구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년				2019년				
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
합 계	978	32	946	3.41	1,275	34	1,240	2.77	
출연 기관	소 계	978	32	946	3.41	1,275	34	1,240	2.77
	금정문화재단	978	32	946	3.41	1,275	34	1,240	2.77

#### 4-5. 우발부채 현황

☐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☐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20.11. 예정)

#### 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☐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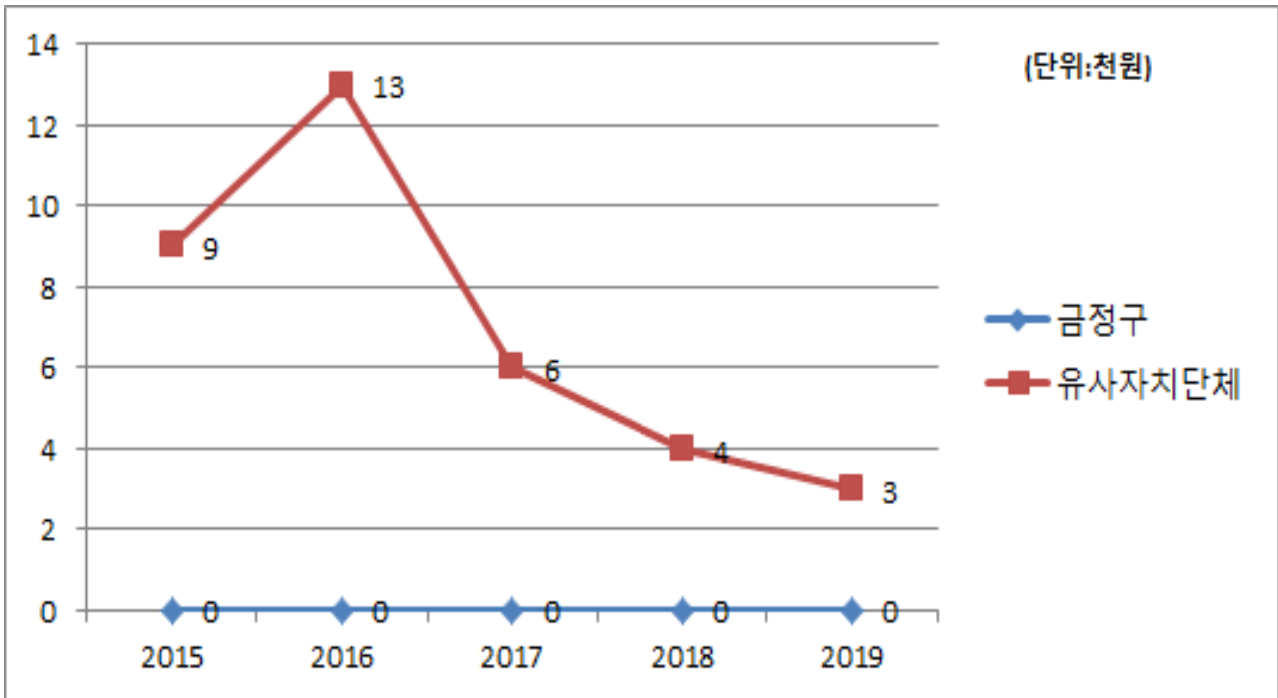
#### 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채무현황	0	0	0	0	0
인구수	246,026	244,624	244,469	242,956	239,062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0	0	0	0	0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,900	2,000	2,100	2,300	2,500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 - \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  - \*\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'공공 및 기타대출'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- ※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(A)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'기본한도액'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'별도한도액'을 더한 금액을 기재

#### 4-8.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#### 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#### 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0~'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'20.11. 예정)

#### 4-11. 보증채무 현황

-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#### 4-12. 채권 현황

-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18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9년도 현재액 (A+B)	
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	
합 계	3,468	△1	0.45	2	3,467	
일 반 회 계	2,848	0	0	0	2,848	
특별회계	소 계	210	△1	0.45	2	209
	의료급여특별회계	210	△1	0.45	2	209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0	0	0	0	0
	기반시설특별회계	0	0	0	0	0
	재정비축진특별회계	0	0	0	0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0	0	0	0	0
	주차장특별회계	0	0	0	0	0
기금회계	소 계	410	0	0	0	410
	양성평등기금	0	0	0	0	0
	자활기금	410	0	0	0	410
	식품진흥기금	0	0	0	0	0
	재난관리기금	0	0	0	0	0
	육외광고발전기금	0	0	0	0	0

▶ '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#### 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채권현황	4,368	4,730	4,523	3,802	3,467

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###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